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8호 중 “6개월”을 “1년(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는 2년)”으로, “외국에서 검사를 받은 것”을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”으로 한다.

제22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또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또는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

제2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15조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생략 확인을 받으려는 자

별표 3 중 “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·충전시설”란과 “[비고] 2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설구분	저장 또는 처리능력	선임구분	
		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 인원	자격 구분
고압가스 일	저장능력 500톤 초	안전관리 총괄자: 1	

반제조시설 · 충전시설	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2,400세제곱미터 초과	1명	
		안전관리 부총괄자: 1명	
		안전관리 책임자: 1명	가스산업기사
		안전관리원: 2명 이상	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[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(이하 이표에서는 “특정고압가스”라 한다)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한 자(이하 “고압가스자동차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”라 한다)로 할 수 있다]
	저장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제곱미터 초과 2,400세제곱미터 이하	안전관리 총괄자: 1명	
		안전관리 부총괄자: 1명	
		안전관리 책임자: 1명	가스산업기사
		안전관리원:	가스기능사 또는 일

	<p>1.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1명 이상</p> <p>2. 제1호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2명 이상</p>	<p>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(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고압가스자동차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할 수 있다)</p>
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60세제곱미터 초과 480세제곱미터 이하	안전관리 총괄자: 1명	
	안전관리 부총괄자: 1명	
	안전관리 책임자: 1명	가스기능사(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로 할 수 있다)
	안전관리원(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): 1명 이상	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
처리능력 1시간당 60세제곱미터 이하	안전관리총괄자: 1명	
	안전관리 책임자: 1명	가스기능사(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

		<p>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<u>고압가스자동차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</u>로,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)</p>
	<p>안전관리원(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 또는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): 1명 이상</p>	<p>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</p>

[비고]

2.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는 고압가스자동차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및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의 상위 자격으로 보고, 고압가스자동차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및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의 상위 자격으로 본다.

별표 4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별표 4 제2호 하목부터 커목까지를 각각 거목부터 피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하.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43조 제1항제3의2호	1,000	1,500	2,000

부 칙<제○호, 2021.○○.○○.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,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개정규정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는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수입된 용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제3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5조(용기등의 검사 생략)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<u>6개월</u> 이내에 반송 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 서 <u>외국에서 검사를 받은 것</u></p> <p>9. ~ 10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22조(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) 한국가스안전공사는</p>	<p>제15조(용기등의 검사 생략) ①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 ----- <u>1년(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 는 2년)</u> ----- ----- <u>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 사를 받은 것</u></p> <p>9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2조(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) -----</p>
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
받아 다음 각 호의 자료부터
해당 기술지도에 드는 비용을
받을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재
등록 또는 「액화석유가스의
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10조
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
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
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
으려는 자

3. <신 설>

[별표 3]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 「액화석유가스의
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10조
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
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
록 또는 「수소경제 육성 및
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
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
재등록에 -----

3. 제15조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
생략 확인을 받으려는 자

[별표 3]

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

시설구분	저장 또는 처리능력	선임구분	
		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 인원	자격 구분
고압가스 일반 제조·충전시설	저장 능력 500톤 초과 또는 처리 능력 1시간 당 2,400세제곱미터 초과	안전관리 총괄자: 1명	
		안전관리 부총괄자: 1명	
		안전관리 책임자: 1명	가스산업기사
		안전관리원: 2명 이상	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
저장 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또는 처리 능력 1시간 당 480세제곱미터 초과 2,400세제곱미터 이하	저장 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또는 처리 능력 1시간 당 480세제곱미터 초과 2,400세제곱미터 이하	안전관리 총괄자: 1명	
		안전관리 부총괄자: 1명	
		안전관리 책임자: 1명	가스산업기사
		안전관리원: 1.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(이하 이 표에서 “특정고압가스”라 한다)를	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

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

시설구분	저장 또는 처리능력	선임구분	
		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 인원	자격 구분
고압가스 일반 제조·충전시설	저장 능력 500톤 초과 또는 처리 능력 1시간 당 2,400세제곱미터 초과	안전관리 총괄자: 1명	
		안전관리 부총괄자: 1명	
		안전관리 책임자: 1명	가스산업기사
		안전관리원: 2명 이상	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
저장 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또는 처리 능력 1시간 당 480세제곱미터 초과 2,400세제곱미터 이하	저장 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또는 처리 능력 1시간 당 480세제곱미터 초과 2,400세제곱미터 이하	안전관리 총괄자: 1명	
		안전관리 부총괄자: 1명	
		안전관리 책임자: 1명	가스산업기사
		안전관리원: 1.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(이하 이 표에서 “특정고압가스”라 한다)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(이하 “고압가스자동차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”라 한다)로 할 수 있다]	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

	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1명 이상 2. 제1호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2명 이상				양성교육이수자로 할 수 있다)
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 당 60세제곱미터 초과 480세제곱미터 이하	안전관리 총괄자: 1명			2 ----- ----- ----	
	안전관리 부총괄자: 1명				
	안전관리 책임자: 1명	가스기능사(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할 수 있다)			----- 고압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-----
	안전관리원(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): 1명 이상	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			
처리능력 1시간 당 60세제곱미터 이하	안전관리총괄자: 1명				
	안전관리 책임자: 1명	가스기능사(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,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)			----- 고압가스 자동차 충전 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, -----
	안전관리원(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 또는 공기를	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			

<p>충전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: 1명 이상</p>	<p>----- ----- ---</p>
<p>[비고]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·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·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의 순서로 먼저 규정한 자격을 상위자격으로 본다.</u></p> <p>3. ~ 12. (생략)</p> <p>[별표 4]</p> <p>과태료의 부과기준</p> <p>1. 일반기준</p>	<p>[비고]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는 고압가스자동차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및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의 상위 자격으로 보고, 고압가스자동차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및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의 상위 자격으로 본다.</u></p> <p>3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4]</p> <p>과태료의 부과기준</p> <p>1. -----</p>

<신 설>				
하. ~ 키. (생략)				

<신 설>

하.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 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 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 가하는 것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43조 제1항 제3의2 호	1,000	1,500	2,000
거. ~ 피. (현행과 같음)				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6
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
다. 다만, 별표 3의 개정규정은
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
시행하고, 별표 4의 개정규정은
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
다.

제2조(적용례) 제15조제1항제8호
에 따른 개정규정 중 산업통상
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
용기는 개정규정이 시행되기
전에 수입된 용기에 대하여도
적용한다.

제3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
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

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
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
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
정에 따른다.